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4. 18 선고 2023나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4. 18 선고 2023나6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16 선고 2021가합1066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차균희, 김승식

피고, 항소인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노승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성훈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4. 18.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16. 선고 2021가합106608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J 사이에 2017.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2. 24. 접수 제12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증여계약을 6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증여계약을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고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J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2. 24. 접수 제12245호로 2017. 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은 2017. 9. 29.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L 주식회사는 2019. 6. 20.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4. 1. 30. 위 주식회사 K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4. 3. 6. 위 L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6쪽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V그룹과 체결한 투자 약정의 주된 내용은 ‘투자금에 대하여 월 3%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일 기준 1년이 되는 일자에 원금을 순차적으로 반환한다’는 것이었으므로, 2016. 3. 이후 원고들이 투자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J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J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그 지급 시에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투자금 일부를 나중에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이 그 약정 반환 시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오, 판사 장현석, 판사 이주일

별지